

# Samil Flash

##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

2007년 7월 10일에 공표된 개정 기업회계기준 및 지난 6월에 발표된 적용의견서 [07-1] '기업분할에 대한 중단사업의 적용 방법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■ 적용시기(\*)

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. 다만,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.

(\*) 상기와 다른 경우 별도 기재함.

### ■ 개정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

####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

-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만 작성(비교재무제표 포함) [문단 7, 8]  
(개정 전: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 작성)

####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

-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형자산의 경우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님. [문단 4] (개정 전: 적용범위에 포함)
-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유형자산으로 분류 [문단 9]
  - 요건: 내용연수 1년 이상, 특정 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, 사용빈도가 불규칙적
 (개정 전: 유형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)

####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

- 분리형 신주인수권의 신주인수권대가는 발행가액에서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[문단 7]  
(개정 전: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비율로 배분)

##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

###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

-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'0'이하가 될 경우 손실을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투자성격의 자산에 '단기대여금', '대차대조표일 후 회수된 채권과 같이 회수가능성이 큰 채권'이 제외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함. [문단 28]
- 종속회사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투자차액은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추가 취득한 지분과의 차이금액임. [문단 39(나)] *(개정 전: 종속회사 순자산)*

###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

- 리스제공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'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'의 적용대상인 경우 기준서 제19호가 아니라 제24호에 따라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므로 유동·비유동을 구분을 하지 않음. [문단 49의 2]  
*(개정 전: 모든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·부채를 유동·비유동 구분하여 표시)*
- 개정 문단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,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.

###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

- 특수관계자 정의: 문단 9 (가)의 (1)~(8)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 이외에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,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을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삭제 [문단 9(9)]
- 주식공시 대상 수정: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(개인 포함)의 명칭. 단, 해당 특수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,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회사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하위 지배회사)의 명칭 [문단 12]

##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

###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

-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‘연결재무제표’의 제정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및 양식 개정 [문단 11, 22]
- 주식사항 중 결합포괄손익계산서 추가 및 부분별 정보 주석에 대한 내용 및 양식 개정 (업종별 자산·부채 현황 및 업종별 손익현황) [문단 22]
-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,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###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-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

- 보증계약과 신용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시: 채무불이행 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파생상품의 적용대상이 아님. [문단 3(3-15)] (개정 전: 보증계약)
-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: 파생상품의 잔여기간 (신규 계약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)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. [문단 8다(3), 9다(2)]  
(개정 전 : 보유중인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수단 지정 금지)
-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도록 규정을 수정함. [문단 8나(6), (8-7), (8), (8-10), 9나(5)·(6), 10가(2)·(3), 10나(1)·(4), (10-7), (10-8), 11나]
- 적용시기 전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.

## 2007년 개정 기업회계기준

###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7-1 기업분할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'중단사업'의 적용 방법

#### [물적분할의 경우]

-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각 또는 일부 매각으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'중단사업'을 적용
  - 1)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'사업의 종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'에 포함
  - 2)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이내
  - 3) 그 외 다른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
-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, 개별재무제표에서 사업의 중단인 처분으로 보지 않음.

#### [인적분할의 경우]

- 다른 중단사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'중단사업'을 적용

#### [적용시기]

-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([www.kasb.or.kr](http://www.kasb.or.kr))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www.samil.com](http://www.samil.com)